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194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생산·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생산 및 분석·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생산 및 분석·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 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생산 및 분석·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운영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이하 “기후변화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성층권 오존,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생산 및 분석·배포할 수 있다.

②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

에 대한 예보

-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 1. 호우
- 2. 대설
- 3. 태풍
- 4. 강풍
- 5. 황사
- 6. 건조
- 7. 한파
- 8. 폭염
- 9. 풍랑
-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뭃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을 “(항공기의 안전운항

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를 “기상청장은”으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를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를 “각 호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예보의 세부종류·내용, 제2항에 따른 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5. 경찰청
6.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3. 그 밖에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④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국방부
3. 환경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그 밖에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2. 통보에 따른 전파 체제를 마련할 것
3.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⑥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 각 호의 수신 절차에 관한 업무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은 제5항에 따른 수신 절차를 마련하거나 제6항에 따른 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수신 절차의 내용 또는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기관은 특보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수신 절차 및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8조의2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9조제4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연구개발기관) 법 제3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별표 4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학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기상 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제20조의3(중전의 제20조의2)의 제목 “(기상과학관의 운영 등)”을 “(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과학관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상과학관의 설립 추진 및 운영 계획
3. 기상과학관의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4. 기상과학관 설립 부지 조성계획
5. 기상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신청서 및 사전평가 결과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 및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를 제23조의2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운영
2.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교육
2. 법 제35조에 따른 기상업무 종사자(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
3. 법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교육
4. 법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변경지정, 경비 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35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6. 법 제35조의5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및 체납처분

7.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 기상위성 관측망 및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운영

3. 법 제7조의3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운영

4.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의 운영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태풍특보는 제외한다) 및 예비특보(태풍예비특보는 제외한다)

7.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8.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9.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의 운영

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위성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3. 법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⑤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상레이더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⑥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상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운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결과 공고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⑦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기상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항공기상 관측망을 통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4.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소관 기상업무로 한정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3조의2(중전의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 중 “처리방법”을 “처리방법 및”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상현상의 관측”을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제23조의2(중전의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매반기”를 “매 반기”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별표”를 “별표 5”로 한다.

별표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중전의 별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7조 본문”을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1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나.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2호	30	5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대설·태풍·강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지진해일주의보·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지진해일경보·태풍경보·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별표 1]

특보의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호 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 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강 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μ g/m 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 조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 파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circ}$ C 이상 하강하여 3 $^{\circ}$ 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circ}$ C 이상 낮을 것으로	10월 ~ 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circ}$ C 이상 하강하여 3 $^{\circ}$ C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circ}$ C 이상 낮을 것으로

	<p>예상될 때</p> <p>2. 아침 최저기온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p>예상될 때</p> <p>2. 아침 최저기온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3.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폭염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p>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1.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p> <p>2.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p>
풍랑	<p>해상에서 풍속 $50.4\text{km/h}(14\text{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p>	<p>해상에서 풍속 $75.6\text{km/h}(21\text{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p>
폭풍해일	<p>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p>	<p>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p>

비고

1. “실효습도”란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2. “천문조”란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引力)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수간만의 차를 말한다.

[별표 2]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제9조제5항 관련)

종 류	주 의 보	경 보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풍 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폭 풍 해 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별표 3]

항공기상특보 종류별 기상현상(제10조제2항 관련)

종 류	기 상 현 상
공항경보	1. 태풍 2. 뇌우(雷雨) 3. 우박 4. 대설 5. 강풍 6. 호우 7. 구름고도(Ceiling) 8. 저시정(低視程) 9. 먼지 또는 모래보라 10. 그 밖에 공항시설 및 주기(駐機) 중인 항공기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급변풍경보	급변풍
위험기상정보 (SIGMET information)	1. 태풍 2. 뇌우 3. 난류 4. 착빙(着氷) 5. 산악파(山岳波) 6. 화산재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저고도 위험기상정보 (AIRMET information)	1. 지상 풍속 2. 지상 시정 3. 구름 4. 뇌우(적란운을 포함한다) 5. 난류 6. 착빙 7. 산악 차폐 8. 그 밖에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

	을 줄 것으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현상
--	-------------------------------

비고

1. “뇌우”란 번개, 강풍, 우박 등을 동반한 강한 비를 말한다.
2. “구름고도”란 구름이 하늘의 8분의 5 이상을 가리게 되는 최하층 구름고도를 말한다.
3. “착빙”이란 공기 중에 냉각된 물방울이 항공기 기체에 얼음으로 달라붙는 현상을 말한다.
4. “산악파”란 기류가 산을 넘을 때 생기는 대기 파동을 말한다.

[별표 4]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또는 기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다. 기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라. 기상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마. 기상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시설·장비 기준
 - 가. 교육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마련하고, 기상관측망의 구축·관리를 위한 세부사항과 특보 및 태풍예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마련(제2조)

- 1)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에는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 2) 기상청장은 국가기상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기상관측망 구축·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제4조)

- 1) 기상청장은 지상기상 관측망, 해양기상 관측망, 기후변화 관측망 등 기상관측망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장소에 기상관측망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
- 2)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관측망의 개발, 관측정보의 수집·생산·분석·배포, 관측정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보 및 예비특보의 발표기준(제8조의2 신설)

- 1) 특보는 호우, 대설, 태풍, 강풍,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풍랑, 폭풍해일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하도록 함.
- 2) 예비특보에는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이 포함되도록 함.

라.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제8조의4 신설)

- 1) 북서태평양 중 북위 60도를 기준으로 동경 180도의 교점과 동경 100도의 교점 그리고 북위 0도를 기준으로 동경 100도의 교점과 동경 180도의 교점을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안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태풍예보를 하도록 함.
- 2) 태풍예보에는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최대풍속,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가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